



서울특별시건축사회
1965. 10. 23 설립

“건축사 바로 세우기”
“설계업무대가 정상화하기”

수신자 **서울특별시**
(참 조) **건축기획과장**
제 목 **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 관련 업무협조 요청**

1.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2. 우리회에서는 소규모건축물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 현행 건축법 제25조 제2항의 각호에 의해 서울시 25개구청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황 파악(2017.4.17.~2017.12.31)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자료를 요청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- 다 음 -

(단위 : 건)

구 분	건설기술 진흥법」 제 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	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	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	계
○○구	건	건	건	건
○○구	건	건	건	건
○○구	건	건	건	건
계				



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

담 당(가인) **김동호** 팀 장 **차재엽** 사무차장 **구철희** 부회장 **김태문** 회 장 **김준식**

(공람)부회장 **김재록** (공람)부회장 **최찬수**

협 조 자

시 행 건축 2250 - 579 (2018. 8. 2.) 접 수

우)137-87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-55 건축사회관 7층

전 화 02-581-5715 전 송 02-523-2284 www.sira.or.kr